

## 보도사진의 윤리성과 법적문제

김 동 철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I. 문제의 제기

사진은 예술로서의 차원에서 인간생활에 작용할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오락으로서, 기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간생활 전반에 걸쳐 깊이 작용한다. 인간의 의사소통수단의 하나로서 보도사진은 보도매체내용의 일부가 되며 활자와 함께 보도매체의 사회적 가치와 동일한 준거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보도매체가 갖는 사회적 기능 가운데서도 특히 보도사진의 사회적 가치성은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첫째는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성이다. 특히 인쇄매체의 경우 활자에 못지않게 사진의 기록성은 뛰어난 것이다. 생생한 한 장의 사진의 보존으로 시공의 제약을 극복해서 지난 일을 재현하는 가장 정확한 기록이 된다. 크리미아 전쟁이나 스페인 내란, 한국전쟁 등의 전쟁기록사진은 물론 그 밖의 수 많은 사건의 기록, 또 수십 년 전의 서울의 모습과 오늘의 그것을 비교해서 화면에 담겨진 거리의 모습이나 건물, 도시구조, 인물의 복장, 시대상 등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등 역사의 기록으로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각종의 문화유산을 남겨 주는 것이다. 그 둘째는 사회적 기술로서의 보도사진의 가치이다. 역사적인 예를 들면,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기의 미국의 「리이스」나 「하인」 등 사진 작가들에 의한 사회 고발적인 많은 사진은 그 좋은 예가 된다. 그들은 빈민가나 이민수용소 또는 소년노동자가 혹사당하는 장면을 촬영 보도함으로써 독자대중을 감동시켜 사회발전을 위한 계획을 낳게 하였다. 1930년대 미국의 F.S.A.다큐멘터리 사진운동도 그 좋은 예이다. 그 사진운동에서도 대중에게 언어보다도 더 강한 현실감을 가지고 비참한 상황을 목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 개선의 필요를 절실히 인식하게 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근한 예로, 3.15 부정 선거 때의 신문보도사진, 그 중에서도 특히 김주열 소년의 시체사진의 보도가 몰고 온 충격이라든가, 영일선거개표중의 환표순간을 어둠 속에서 촬영 보도한 것 등은 한 장의 사진이 선거결과를 뒤집고, 더 나아가서 정권의 붕괴를 재촉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준다. 보도사진은 이와 같이 커다란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독자의 보도사진에의 의존도가 점차 커져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 독자들은 홍수와도 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정보를 바쁜 시간 안에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매우 긴 문장으로 된 기사보다도 더 실감나고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 보도사진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진은 글로 된 것 보다 더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습성도 곁들여 보도사진이 차지하는 위치가 날로 중요시되고 있다. 1930년대까지의 거의 모든 신문이나 잡지에서 사진은 본문 기사를 위한 보충내지는 해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 기술과 제판 및 인쇄기술의 발달과 함께 보도사진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열독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신문지면의 증면과 천연색 사진 인쇄술의 발달로 사진은 인쇄 매체를 호화롭게 장식해 주고 있으며, TV 매체의 TV 뉴스나 보도적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의 등장은 보도 저널리즘에 하나의 혁명을

가져왔으며, 보도사진 저널리즘은 실로 거대한 힘을 갖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보도사진은 이렇듯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진은 시간의 흐름이 아닌 적절한 단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상보다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또 쉽사리 망각하지도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매일 발생하는 뉴스를 설명하기 위해 사진이 이용될 때 사진은 강력한 보도내용을 구성한다. 보도사진이 이화 같이 정신적 충격을 자극시키기 위해 쓰이는 경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부수적 문제들이 생긴다. 따라서 이렇듯 강력한 기록 도구인 사진의 작가나 편집자들은 그들이 사진이라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공표할 때 매우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또 수용자들의 반응에 민감해야 하고 사람의 권리인 명예와 사생활의 자유권 등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 보도사진 저널리즘의 윤리성과 법률적 문제가 존재한다. 보도사진의 법률적 문제 가운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과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첫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통제로서 특히 사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의 자유침해, 재산권, 신용권 등의 침해 등을 들 수 있고, 둘째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통제로서 음란한 사진적 표현물에 대한 규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셋째 국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통제로서 국가기밀내용을 다룬 사진적 표현물에 대한 규제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법정 내에서의 촬영금지 또는 규제의 문제 또한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적지 않은 법률적 문제임에 틀림없다. 필자는 이 글속에서 특히 보도사진저널리즘의 윤리성의 문제를 다루는 한편, 법률적 문제 중에서 개인적 법익과 관계되는 권리, 즉 초상권이나 명예권, 사생활권 등을 주로 다루고자 하며, 음란표현물의 문제나 국가기밀에 관계되는 사진의 문제, 또는 법정에서의 촬영의 자유의 문제 등은 그 하나하나만으로도 매우 방대한 내용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 II. 사진과 개인의 초상권

### 1. 독일에서의 초상권의 문제

초상권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 당하거나 촬영 제작된 사진을 공표, 이용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이란 법률적 권리의 개념을 최초로 고안해 낸 것은 독일에서였다. 각종의 훌륭한 카메라를 생산해 낸 데다 인쇄면에서도 구텐베르크 이래의 전통을 자랑하고, 더욱이 타국보다 성문법의 법률체계가 발달된 독일이니 만큼 사진의 촬영·공표를 둘러싼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다른 나라보다 더 일찍이 발달한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은판 사진술이 1839년에 공표된 다음, 약 40년 후엔 고감도의 필름과 핸드카메라가 개발된 데 이어, 1890년대에는 찍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촬영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자 베를린고등법원의 케이스너(Keyssner) 판사가 1896년에 초상권(Das Recht am eigenen Bilde)을 설정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항해야 한다고 제창하였으며, 그 권리의 내용은 「사람은 동의 없이 자기의 초상을 촬영 당하거나 그것을 무단으로 복제·공표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케이스너 판사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촬영 당했을 때에는 카메라를

열고 감광필름에 광선을 찍어 이를 무효케 만든다는 일정한 조건의 자위권을 인정해야 하며, 예술가가 기억을 더듬어 초상화를 그리는 경우에도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초상권의 침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케이스너의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나 그 주장이 있는 수년 후인 1898년 7월 30일 밤 당시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임종의 자리를 두 명의 사진사가 침입하여 마그네슘 플래시를 써서 초상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초상권설정의 주장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그 권리의 내용을 동의 없이 공표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동의 없이 촬영 당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독일법조계에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 논쟁은 수년간 계속되다가 1904년의 제 27회 독일법률가협회 총회에서 초상권의 보호를 공표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1907년에 제정된 「조형미술 및 사진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에는 위의 결의에 입각하여 제 22조 내지 제 24조에 초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초상권에 관한 독일의 이러한 법률적 개념은 그 후 유럽각국에 확대되어, 독일의 규정을 본받은 조문이 여러 나라의 저작권 관계법령 속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초상권을 무단으로 공표 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규정한 독일에서도 그 후 무단촬영 거절권을 승인하는 새 판례가 나오기에 이르렀으니, 즉, 「유명 인사라 하더라도 그 사적 영역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공표의 목적으로 하는 사진을 촬영 당하는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새 법 이론이 확립되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독일에서도 허락 없는 초상사진의 공표 뿐 아니라 허락 없는 초상사진의 촬영 제작도 불법화해야 한다는 민법개정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 미국에서의 초상권의 문제

한편 미국에서는 1880년대에 소위 황색신문의 신문편집 경향이 발생하기 시작한 데 이어, 범죄·스캔들 등의 선정적 기사보도가 눈에 띄게 많이 취급되었는데, 신문계의 이러한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던 1890년에 워렌(Samuel D. Warren)과 브랜다이즈(Louis D. Brandeis)가 「Harvard Law Review」에 논문 "the Right to Privacy"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신문의 보도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논문 속에서 사진의 문제도 매우 크게 취급되고 있는 바, 이 저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사람을 촬영할 수 있었던 시대에는 사진의 촬영에 계약 또는 신학의 법이론이 유효하였으나, 사진술의 발달로 몰래 살짝 찍을 수 있게 된 새 시대에는 이러한 법 이론은 적당하지 않고, 불법행위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되며, 사진에도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에서의 초상권 논쟁에서와는 달리 워렌과 브랜다이즈의 논문에서는 알지 못한 사이에 촬영 당할 수 있음을 하나의 현실로 인정하고 여기서 의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 논문이 발표된 때로부터 약 50년 동안에 있었던 각종의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에 대한 판례를 통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사건을 프로서(William L. Prosser)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 원고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격리된 사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 침입하는 행위, 둘째,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원고 개인의 사적인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셋째, 원고에 관한 어떤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타인의 눈에 원고의 참모습과 상이한 인상을 주게 되어 공중이 개인을 왜곡하게 하는 행위, 네째, 성명이나 초상과 같이 원고의 극히 사적인 것을 피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미국에서 초상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관계 입법을 최초로 한 주는 캘리포니아주(1899년)로써, 공직자 이외의 초상은 사전에 승낙서를 받지 않고 신문 등에 공표함을 금하는 내용이었으나, 이 규정은 1915년에 폐지되었다. 한편, 뉴욕주는 1903년의 프라이버시 관계 법 속에서, 사람의 이름, 초상, 그림을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광고목적 또는 영업적 거래의 목적으로 사용함을 금지하였다. 미국에서의 판례로는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촬영은 촬영행위만으로도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정되고 있다. 일례를 들면 AP 통신의 명예훼손에 관한 업무상 주의사항을 담은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명시하고 사진기자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느 사진기자가 어느 더운 날 자기집 현관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부인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녀는 간단한 홈웨어를 입고, 머리에는 켄을 하고, 발에는 끈이 달린 샌들을 신고 있었다. 그 사진은 그녀의 집 앞 도로에 주차하고 있었던 자동차 속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그 사진은 무더운 날씨를 담은 사진을 게재하려던 그 신문의 기사재료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 제소하였다. 법정은 신문의 기각주장을 물리쳤으며, 사진에 촬영된 장면은 「특히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이 아니었으며」, 「찍힌 사람은 알지 못한 사이에 몰래 찍은」 촬영이었고, 「사람을 당혹케 할 포즈」의 사진의 공표로 말미암아 사람의 품위의 한계를 짓밟았다고 판시하였다. 또 어떤 부인은 어린이 둘을 데리고 군의 박람회 가서 깜짝 놀라게 하는 놀이터를 구경하고 있었다. 한 신문사진기자가 제트기류로 그녀의 치마자락이 바람에 빨려 허리위로 말려 오르는 순간의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녀가 법정에 제소하였고, 앨라배마주의 대법원은 손해배상을 명령했던 하급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 3. 일본에서의 초상권의 문제

사진과 인권과의 관계를 놓고 일본에서 문제 되었던 것은, 경찰관의 증거수집을 위한 사전촬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초상권을 들고 나와 형사재판 법정에서 쟁송한 것이었다. 경찰관에 의한 촬영이 초상권의 침해라고 한 피고인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몇 군데의 하급심재판에서 나온 뒤를 이어, 1969년 12월 24일에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이 처음으로 이 문제에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대법정판결은, 데모행진이란 위법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경찰관이 데모 대원으로부터 전치 1 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소위 교토부학연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측의 초상권의 주장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상의 자유의 하나로서, 누구든지 그 동의 없이 함부로 그 용모·자태를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초상권이라 칭할 것인가는 별문제로 하고, 적어도 경찰관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개인의 용모 등을 촬영함은 헌법의 취지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그 다음에, 촬영 당하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판관의 영장 등이 없이도 경찰관에 의한 촬영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① 현재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범행이 있었던 직후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②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을 띠고 있으며, ③ 또 그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졌을 때의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일반 민간인이나 보도기관의 기자가 촬영한 사진은 공표된 다음 비로소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경찰관에 의한 촬영은 공표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 촬영 당한 사람쪽은 그것 만으로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의 판례는 일반적으로는 초상권을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위의 판결은 미묘한 표현으로 「함부로 용모·자태를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초상권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표현을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일본하급심재판 판결은 초상권이란 용어를 회피하고,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라는 말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관에 의한 촬영 이외의 경우의 사례로서 노동조합원의 위법 행위를 8 미리 카메라로 촬영한 당국측의 현지 대책원에 대해 조합원이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札幌(찰황)고등재판소는 1977년 2월 23일, 일반 민간인이 피촬영자의 승낙 없이 용모·자태를 촬영했다 해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범한 것으로 보지 않을 요건을 적시하였다. 동 재판부는 정당한 보도목적에 관한 취재에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사진촬영의 목적이 정당한 보도를 위한 취재, 정당한 노무대책을 위한 증거보전, 소송 등에 의한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증거보전 등, 사회 통념상 시인 될 수 있는 정당한 것으로서, ② 촬영의 필요성 및 긴급성을 띠고 있으며, ③ 또 그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될 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졌을 때의 세 요건을 들고 있다. 또 한가지의 사례로, 제 1 차 나리타 비행장 데모사건 때, 데모대원이 삼리총어료목장 폐장식전의 회장에 난입하는 장면을 아마추어 사진가가 사진 컨테스트에 출품하기 위해 촬영했는데, 이것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어, 그 증거능력 유무를 둘러싸고 쟁송된 사건에서, 동경고등재판소는 1981년 3월 31일, 데모대원들은 「일반 사인으로부터 용모·자태를 사진 촬영함을 승낙 받았거나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기 받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해도, 일반 사인으로부터 사진을 촬영 당할 정도의 관심대상이 되었음은, 오히려 소기의 성과의 일단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른 것」이므로, 그와 같은 광경을 촬영하는 경우, ① 사진촬영의 목적이 사회 통념상 시인 될 수 있는 정당한 것이며, ②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것일 때에는 허용되는 수도 있다고 판단함에 옳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일반 사인의 촬영이나 보도기관의 촬영에 있어서는 비상식적인 목적이나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필요성과 긴급성이 없다 해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며, 보도기관이나 일반 사인이 동의를 얻지 않은 환경에서의 촬영가능 범위가 넓어졌음을 뜻하게 된다.

한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촬영 방법이라고 판단된 사례를 일본의 재판판례에서 들어 보면, 목욕중의 나체장면을 몰래 숨어서 찍은 것, 야간에 가까운 거리에서 데모참가자의 얼굴을 플래시 사진으로 촬영한 것 등이 있다.

#### 4. 한국에서의 초상권의 문제

초상권의 문제가 우리나라 법정에서 다루어진 것은 그다지 오랜 역사를 갖지 못한다. 1982년 7월 21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제 16부(재판장 안우만 부장판사)에서 내린 결정이 그 하나의 예로서 이 재판에서는 을산그룹 대표 신선호가 출판사 **기린원**(대표 서석원)을 상대로 제출한 「서적인쇄 및 발매금지 등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본안판결확정 시까지 피신청인(기린원)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서울은 지금 몇 시인가」라는 신청인 신선호의 사진을 게재한 서적을 인쇄·제본·발매 반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 신씨는 기린원이 출판한 서적 내용 가운데 자신이 대표로 되어 있는 기업체의 도산사실을 왜곡표현해서 자신과 그리고 그의 관련기업인 서울종합터미널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자신의 동의 없이 문제의 사진을 책 뒷표지에 게재해서 상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서적에 게재하여 인쇄·발매 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 외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된 사건 중 언론매체에 게재된 사진의 보도내용이 오보로서 재산권, 신용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호소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 문제된 보도사진의 사례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 5. 초상권의 법률적 성격

위에서 소개한 각국에서의 초상권 발달과정과 몇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초상권이란 ① 본인의 동의 없이 용모·자태를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무단촬영 거절권), ② 촬영된 초상사진, 작성된 초상사진의 공표·이용을 무단으로 당하지 않고 또 무단으로 복제하지 못하게 할 권리(무단 공표·이용 거절권, 무단 복제 거절권), ③ 초상사진을 무단으로 영리목적 위해 사용 당하지 않을 권리(상업적 이용거부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람은 자기 초상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련되는 명예나 신용 등에 관련되는 인격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상권이 인격권의 하나가 되는 것이요, 또 자기 초상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재산권의 하나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사람의 초상을 묘사하는 것은 그림이나 조각이외도 근래에 와서는 사진에 의하는 것이 가장 흔하므로 인격권의 하나로서의 초상권을 논의할 때에는 무단촬영·사진의 무단복제나 무단이용 등은 마땅히 인격권의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상권이 실정법상 확립되어 있지는 않고 있다 하더라도, 현행 헌법 제 9조에 의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제 16조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할 권리의 하나로 봄이 마땅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에 위반하지 않는 한 국민은 그 승낙 없이 사진을 촬영 당하거나 이것을 함부로 공표 당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상권은 초상영리권 또는 초상재산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재산권을 내포하고있다. 예컨대, 촬영된 자기 초상사진을

스스로가 광고 목적에 이용함으로써 재산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며, 또 촬영된 초상사진 작성된 초상의 이용이 불법행위가 됨으로써 손해배상권이 되어 결국 독립해서 재산권이 된 것으로 이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초상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 이득이므로, 이 부당이득에 근거를 둔 권리를 재산권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의 양면이 존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 어느 한면만이 더 강해지는 수가 있다. 유명도가 높은 TV 텔러트의 초상이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라기보다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침해요, 재산권의 침해라고 판단된다.

### III. 보도사진과 초상권의 문제

이와 같이 개인의 초상권은 인격적·재산적 양면에서의 권리로 인정되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동의 없이 초상을 제작하거나 복제당하지 않을 자유, 동의 없이 초상을 이용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동의 없이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자유 및 권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언론보도와 초상권의 관계는 어떤가? 초상권이 프라이버시의 자유권에 귀속되고, 프라이버시의 자유가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임과 같이, 보도사진의 취재와 공표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에 귀속되어 이 또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두개의 기본권은 경우에 따라 상충되는 수도 있게 되며, 그러한 경우에는 비교형량의 원칙의 적용이 불가피 해진다.

공적인물이나 뉴스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보도의 자유라는 견지에서,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사람의 초상권은 보도의 자료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이들 공적 인물 또는 뉴스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초상권의 제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어야지 단순히 흥미본위로 공공적 사항에 관계없이 제공하거나 흥미거리로 공표함으로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거나 그를 모욕하는 인상을 주어, 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1982년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ABC-T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루비 클라크라는 주부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 주부에게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초상권과 사진보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이 사건은 1977년 4월로 소급해 올라가는데, 그때 ABC-TV가 방영한 한 다큐멘터리의 장면에서 「거리의 창녀의 대부분은 흑인」이라는 해설과 함께 거리를 오가는 3명의 여인들을 화면에 담아 방영한 데서 발단되었다. 이 부인은 그 중 세 번째의 부인으로 비추어져서 주위로부터 창녀로 오해받아 멸시당했는가 하면 직장도 잃게 되었으므로, ABC 방송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ABC 측은 이 부인을 창녀로 시사한 일도 없고, 또 작품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영상에서 처음 두 여인과 세 번째로 나온 클라크 부인과의 대조는 「충격적」이었으며, 제작자가 그녀를 창녀로 그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ABC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법원은 언론의 특권에 관해서도 그것이 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클라크 부인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적 인물이나

공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사진 취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중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공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경우, 자기의 초상권이 제한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으로 규제하는 것들, 즉 소년법이나 가사심판법을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의대상자에 대한 사진보도에 관해서는 소년법 (제 61 조)이나 가사심판법 (제 8 조)의 법문에 명확한 금지규정이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그밖에도 한국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에도 있듯이 봉옥한 부녀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해서도 안 된다. 또 법정 내에서의 촬영금지규제에 대해서도 크게 유의해야 한다. 즉 외국의 예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조직법으로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촬영, 중계방송 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82년 3월 10일부터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서는 법정 내에서 촬영하고자 할 때에 ① 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② 소송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으며,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허가될 수 있고, ④ 촬영은 개정 전에 한하며, ⑤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촬영할 수 없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정 내에서의 질서유지와 소송당사자의 인권존중이라는 견지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나, 그 중 소송당사자로부터 실질적 동의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의 해석문제 등은 실무상으로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어쨌든 자유로운 보도와 공정한 재판, 소송당사자의 인권존중이란 큰 원칙이 상충되는 가운데에서도 이익교량원칙 하에서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보도와 초상권의 문제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될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로 보통사람이 그가 사건의 목격자이거나 제보자가 되었을 경우 그의 초상권의 보호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그가 아무리 공공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해도 사진보도나 TV의 영상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면 자기의 이름과 함께 초상이 공표됨으로 해서 인격권의 침해가 가져 오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해를 느끼게도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진보도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IV. 보도사진상의 책임과 면책사유

앞에서도 보아 온 것과 같이, 오늘날 보도사진의 힘은 실로 거대하므로 보도사진을 잘못 다루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도 매우 크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보도사진에 의해 개인이 입는 피해는 앞에서 본 초상권의 침해 이외에 명예훼손, 사생활의 자유침해의 문제와 그 밖에 재산상, 신용상의 손해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1.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의 문제

명예훼손이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 307 조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죽은 사람에 있어서는 308 조의 규정에 의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게 되어 있다. 언론매체가 보도사진을 공표하여 의도적으로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케 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적지않다. 특히 보도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사진에 얼굴이나 건물 또는 간판이 포함되어 보도됨으로써 그 과정을 알지 못하는 독자나 시청자가 오해를 일으키게 되어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언론중재신청사건에도 이러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사건번호 82 서울중재 13 과 14 의 경우, 국내의 두 TV 방송사가 1982년 5월 22일과 27일 뉴스시간에 서울 YMCA 시민 중계실에 고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실태와 피해자들을 탐방한 기획기사 가운데 보증금을 사취당한 피해자가 부쩍 늘고 있다는 것과 피해자들의 고발내용, 사기수법 등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다다실업」의 회사간판과 상호, 특약점 계약서 등의 보도사진(동사진)과 『고발 당한 「다다실업」 특수인장 보급업체』라는 자막과 함께 방영함으로써, 「시민 중계실에 진정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다다실업>을 사기(사기)업체로 인지시켜 특약점 해약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다다실업 주식회사는 사기업체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정서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KBS의 경우 막후절충으로 다다실업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보도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중재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고 중재신청을 취하하였으며, MBC의 경우는 보도내용의 일부가 잘못되었음을 방송사가 시인하고, 다다실업의 제품을 뉴스시간이 아닌 다른 프로에 소개해주겠다고 제의,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중재신청을 취하하였다. 보도사진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흔히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사진에 게재하여 오인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확인하지 않고 잘못 보도하는 경우,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주장을 과신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은 무시한 채 공정성을 잃은 보도를 하는 경우와 같이 오보의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보가 아닌 진실의 보도를 했다 해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형편인 데도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지도 않았거나 얻은 것으로 착각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반하여 사생활의 침해의 문제는 진실한 사실의 보도사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관계 있다고 밀거나 본인이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보도하는 경우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 2. 재산상의 손해문제

보도사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의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가 있다. 중재 신청된 후 정정보도 된 사건 가운데 84 서울중재 18 사건을 보면 『젓은 목욕 나쁘다』라는 제목 밑에 라돈 사우나탕에 관한 보도가 1984년 5월 16일 KBS-1TV의 9시 뉴스에 방송되었는데, 그 내용 속에서 열탕이나 증기탕에 오래 있게 되면 피부의 각질 세포층이 파괴되어 각종의 세균에 감염되기 쉽고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의의 말과 함께 피부병 환자들이 환부를 보기 흉하게 긁고 있는 장면과 「스파라돈 사우나」라는 특정업소의 간판과 실내 등을 배경화면으로 방영하였는데, 중재신청인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스파라돈 사우나」와는 직접적 관련이

전혀 없는데도, 기사 안의 좋지 않은 내용이 관련업소와 연관 지어져 나쁜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KBS-TV가 이러한 보도를 함으로써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스파라돈 사우나」라는 특정업소는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이 중재사건은 KBS-TV가 같은 달 29일 밤 9시 뉴스에서 『라돈 사우나탕이 몸에 어떻게 좋은가』하는 내용으로 의사 및 고객들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소의 간판을 배경화면으로 하여 방송하자 제 2차 중재기일에 중재신청을 취하하였다.

### 3. 보도상의 면책사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며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을 촬영했다면 공표하기 전에도 이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도사진에 의한 피해는 보통 사진이 공표됨으로써 그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보도사진의 공표에 따르는 권리의 침해, 즉 명예훼손, 사생활의 자유 침해, 재산권 또는 신용권 침해 등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의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일반언론보도에 의한 책임의 면책사유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즉 명예훼손이나 재산권 또는 신용권의 침해의 경우에는 보도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계될 때에는 면책되는 것이다. 다만 기사보도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해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면책되는 것이 일반이며, 기사보도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나, 사실성을 띠는 사진보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진실한 광경의 사진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진이란 흔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점 논란의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한편 사생활권의 침해의 경우도 기사보도에서와 같이 그 공표된 보도사진이 공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뉴스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뉴스가치가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공표된 사진이 ① 정당한 공중의 관심사이고, ②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공적 인물에 관한 사항이며, ③ 공적인 기록에 관한 것이면 뉴스가치의 요건이 구성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문제된 보도사진의 공표가 본인의 사전허가를 받아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면책된다. 즉 촬영되어 공표된 사진에 찍힌 본인이 촬영·공표를 승낙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재산권 침해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책임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촬영·공표에 대한 승낙은 어떠한 것이어야 충분한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점에 대해 일본의 판례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 (1) 일본의 판례

동경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회사원이 사진을 찍히고, 사진잡지에 공표됨으로써 사회적신용을 실추당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소위 동경온천사건(동경지재, 1956년 8월 8일 판결)에서, 촬영자가 욕실에서 정상의복을 입은 채, 사진통신사의 사진기자임을 나타내는 완장을 차고 사진을 취재하였으며, 사진이 찍힌 목욕객은 공표된 사진의 내용으로 보아 카메라맨이 자기를 촬영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찍혀 있었던 점을 들어, 동경지방법재판소는 「자기의 자태가 촬영되었을 때는 공표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으므로, 공표까지 포함하여 사진촬영을 승낙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경우 승낙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무관하며, 또 촬영한 사람들이 보도기관의 사진기자임을 명시하였고, 찍힌 쪽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진촬영은 물론, 공표까지도 승낙한 것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로서, 일본 광도지방법재판소의 1962년 2월 27일 판결을 보면, 뉴스영화 「적자선」의 촬영에 협력했던 일본 국립철도의 한 자동차 영업소의 버스 안내양이 그 뉴스영화의 나레이션 속에 「뻗뻗하게 서 있기만 했다」는 말 해설이 들어가 있었다고 화를 내면서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적자선」 사건이 있었다. 이에 재판소는 「뉴스 필름이 원고가 기대한 것과 같이 편집되지 않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어쨌든 원고는 일단 촬영을 승낙하고 있으며, 피고의 의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고, 원고 개인의 자태·용모를 소개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초상의 사용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에 기만을 당해 협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기대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편집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써 초상권의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와는 반대로, 언론매체의 사건은 아니었으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의 무단공표가 문제시된 사건도 있어 참고 삼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 신용금고회사의 간부를 규탄하는 전단 수 백장이 그 금고 본점과 지점의 직원에게 배포되어, 그 문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여자 직원과의 불륜관계를 상상케 하는 몰래 찍은 현장사진이 제시, 공표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직위를 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신용금고회사 간부가 제기했던 「전단배포 사진제시사건」에서는 1974년 8월 13일 동경지방법재판소가 「이것이 한눈으로 보아 남녀간의 정사인 것이라 상상하게 하고,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원고가 본건 사진의 공표를 승낙한 사실이 있을 수 없다고 추측되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사진공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는 비록 프라이버시란 용어는 쓰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전형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해서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사진공표의 면책 여부의 문제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 (2) 독일의 판례

독일에서는 사람의 초상을 포함한 사진은 동의를 얻어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현대사의 영역에 속하는 인물의 초상, ② 풍경 또는 기타 정경의 사진에 부수되어 찍혀진 화상, ③ 집회, 행렬 및 이와 유사한 행사에 참가 중인 화상, ④ 촉탁에 의하지 않고 작성된 초상으로서 예술상의 고상한 목적으로 배포 또는 전람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 (3) 미국의 판례

또 미국에서는 승낙을 받지 않은 사진의 공표, 이용에 관하여 많은 판례를 통해 다음 네 가지 원칙을 들고 있다. 즉, ① 사진이 광고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 특히 그 사용이 뉴욕주의 프라이버시 법에 관계되는 경우는 원고는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② 사진이 신문의 어느 부분에서든 허위의 기사와 관계 있게 사용된 경우에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사진이 시사적 뉴스 또는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기사와의 관련 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④ 사진이 교육적이고, 견문을 넓히는 성격의 피쳐 스토리 속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책된다. 미국의 경우 공개적인 장소에서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도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사가 있으나, 또 반면에 만약 카메라가 뉴스와는 관계없는 이유에서 어떤 사람을 클로즈업했다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 당했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 (4) 일본의 언론기관 수칙

일본의 경우 사진의 촬영, 공표에 있어 일본의 각 신문사 등이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뉴스성이 없는 가두 풍경이나 풍물시 등을 촬영할 때에는 완장을 차고, 받침대에 올라타는 등 촬영대상자가 촬영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촬영함이 바람직하다. 자연스러운 표정을 촬영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망원렌즈로 찍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진을 촬영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함이 필요하다. ② 사진에 찍힌 사람이 촬영 시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진이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적혀 있는 것이나 또는 좋지 않은 표정이 적혀 있는 것을 공표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수가 있다. 촬영 당한 사람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진은 되도록 사용을 피할 것, ③ 비행소년을 교도하는 장면 등은 비록 뒷모습이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④ 신문사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을 피쳐 기사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촬영된 사람의 상황의 변해졌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되는 수가 허다하므로 특히 유의할 것. ⑤ 지면에 게재된 사진을 외부에 내놓을 경우, 신문사가 촬영한 사진을 그 신문사의신문 이외의 출판물에 게재할 때에는 당해 본인의 양해를 반드시 얻도록 할 것 등이다.

### V. 보도사진저널리즘의 윤리성

앞에서 보아 왔듯이 보도사진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진은 시간의 흐름이 아닌 적절한 단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상보다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또 쉽사리 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매일 발생하는 뉴스를 설명하기 위해 사진이 이용될 때 사진은 강력한 기록의 도구가 된다. 보도사진이 이와 같이 정신적 충격을 자극시키기 위해 쓰이는 경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부수적 문제들이 생긴다. 따라서 이렇듯 강력한 기록 도구인 사진의 작가나 편집자들은 그들이 사진이라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공표할 때 매우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또 수용자들의 반응에 민감해야 하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 보도사진의 윤리문제가 존재한다. 보도사진에 있어서 윤리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① 폭력이나 범죄와 관련된 사건사진의 경우, ②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섹스와 공중도덕에 관계되는 경우, 그리고 ④ 허위조작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1. 폭력이나 범죄에 관련된 사건사진의 경우

시대가 바뀌어짐에 따라 공중의 취향은 많이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이나 범죄사진의 신문게재 적부에 관한 판단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런던의 선데이 타임즈(Sunday Times)지의 편집인인 헤럴드 에반스(Herold Evans)는 이러한 성격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의

공포에는 목적의 정당성과 깊은 감동을 일으키는 사진의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지각이 있어야 한다. 범죄나 폭력을 다룬 사건 사진의 경우 두 가지 질문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하나는 사진이 묘사하는 사건의 보도가 (신문에 게재된 그 사진을 보고 독자들이 받게 될) 충격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또는 역사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또 하나는 그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것처럼 끔찍하고 불쾌한 장면을 소상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쟁 중에 찍은 사진들은 가끔 충격이 정당화되는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들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1968년 사이공의 경찰국장이 베트남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나 네이팜 탄에 맞아 부모를 잃은 소년들이 도로를 뛰어오는 벌거벗은 월남 어린이 등의 사진들은 전쟁에 대한 공중의 충격적인 반응을 TV보다도 더 많이 일으켜 주었다. 그러나 범죄사건으로 변을 당한 피해자의 클로즈업된 처참한 얼굴사진은 그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꼭 그 사진이 게재되어야만 했었나를 묻게 되는 것이다.

## 2.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재의 희생자나 익사장면 또는 기타 각종 사고의 장면 등의 사진에 대해 사진기자와 사진편집자들이 직면하는 극단적인 장면을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보일 것인가의 어려움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람들, 특히 선의의 제 3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를 침해하거나 훼손하면서 까지 그 사진을 보도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칼 린드스트롬(Carl Lindstrom)이 지적하였듯이 「그 장면을 보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거나 <여기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일으키는 사진은 결코 찍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현장을 찍은 끔찍한 사진(자동차가 휴지처럼 납작해진 사진 등)은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가 되기도 하며, 화재사건의 현장사진은 안전을 위한 시설개량이나 화재예방관념의 확산교육을 위해 경고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 3. 섹스와 공중도덕에 관한 경우

이 영역에서의 취급기준은 시대와 장소의 관습에 따라 변화한다. 20년 전에는 매우 충격적이고 저속해 보였던 사진들이 지금은 평범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1946년 불타는 건물로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5층에서 뛰어 내리고 있는 여자의 현장사진이 미국 보스턴의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독자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었다. 독자들은 그 여자가 차도에 떨어져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여자의 내의가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4년 4월 20일 영국의 선 미러(Sun Mirror)지에 게재되었던 경기장에서의 스트리킹사진은 신문에 게재될만한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면에 나왔고, 또 옷을 거의 다 벗은 채 춤을 추고 있는 히피족들의 사진이나 봄방학을 즐기러 플로리다의 해변으로 몰려 온 미국 대학생들이 미인 경연대회를 벌이며 즐기고 있다는 사진설명과 함께 게재된 토플리스의 여성사진이 우리나라 신문의 해외 토픽란에 가끔 실리곤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1950년대에는 출판이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지나치게 공중의 호기심에 영합한

사진들은 외설, 음란의 여부로 논란을 일으키고, 지나친 흥미위주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 이러한 사진들은 건전한 사회기풍의 진작에 커다란 해독을 가져오게 되며,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일부의 주간지나 청소년·여성 잡지 등에서 볼 수 있는 선정적 기사나 사진, 삽화 등은 커다란 반성을 요한다.

#### 4. 허위조작의 경우

카메라는 진실을 왜곡시키기 쉽다. 선전목적이나 단순한 장난으로 조작된 사진은 사진에 대한 신뢰도를 손상시키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선거유세 때 청중의 수를 조작할 염려가 있도록 촬영된 사진 등이 그 예가 된다. 실제 군중은 훨씬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찍는 각도와 위치에 따라 관중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다는 느낌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또 몇 장의 사진을 혼성한 사진은 실제로는 결코 생길 수 없는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장난으로 사진을 조작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독자들은 비윤리적이라고 여기지 않기 쉽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장난에 의한 조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허위조작사진은 카메라의 앵글 외에도 크로핑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예로 유엔총회에서 소련대표가 미국대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비난하고 있고, 이들의 중간 좌석에 자리잡고 있던 영국대표는 귀를 막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은 크로핑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소련대표가 영국대표에게 고함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단지 영국대표만 나오게 크로핑해서 그를 아주 태만한 낮잠꾸러기로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보도사진의 윤리원칙에 문제를 던져주는 실례들이 인쇄매체나 TV 뉴스 화면에 종종 게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도사진기자는 그 게재 사진을 볼 사람들과 촬영 당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보도가치가 있는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어서야 되겠는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논박 당할 사진을 꼭 게재해야만 하는가? 기사보도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그 기사 옆에 게재해 놓고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이라는 사진설명을 넣어 그 사진 속의 인물들을 오인케 함이 용인될 수 있는가? 등, 보도사진기자나 편집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한가지 지침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자기 스스로를 인도할 수 있는 개인적 철학, 굳건한 사명감 그리고 건전한 윤리의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안용교, 초상권의 개념과 의의, 「언론중재」, 통권 제 3 호(1982·여름), pp. 6-13.

「언론중재사례집」, 제 1 전~제 4 집,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

한상범, 사진보도와 초상권, 「언론중재」, 통권 제 3 호(1982 여름), pp 14-20.

村上孝止, 사진의 촬영 · 공표를 둘러싼 인권문제, 「신문연구」, 통권 제 427 호(1987년 2월) (일본신문협회), pp.73-78.

사진지와 인권을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 「신문연구」, 통권 제 425 호(1986년 12월)  
(일본신문협회), pp. 90-93.

我妻 策(편), 「매스컴판례백선 :중요판례 집대성」, 「별책 주리스토」 No.31,  
동경 :유비각, 1971

戒能通孝, 伊藤正己(공편), 「프라이버시연구」, 동경 : 일본평론사, 1962.

Robert M Cavallo, and Stuart Kahan, 「photography, What's the Law?」, (New York :  
Crown Pub., Inc.), 1976.

Harold Evans, 「Pictures on A Page」,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8.

Kenneth Kobre, 「Photojournalism The Professionals' Approach」,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 1980.

William L. Prosser, "Privacy," 「California Law Review」, Vol. 48, 1960, pp.383-423.

Samuel D Warren and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 「Harvard Law Review」,  
Vol, 4,1890, pp.193-220.

- 고려대학교 경제과, 미국 인디애너 대학교 대학원
- 저술 「TV 교육 이론과 실제」 외 논문 다수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